

직제 규정

개정 기록표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1	2009.6.1		16	2015.2.27.	
2	2009.11.13		17	2015.7.21.	
3	2010.3.17		18	2016.1.12	
4	2010.4.14		19	2016.3.1	
5	2010.11.12		20	2016.5.27	
6	2011.3.10		21	2016.8.1	
7	2011. 9. 1		22	2017.3.1	
8	2011.11.29		23	2018.3.1	
9	2012.7.21		24	2018.6.15	
10	2013.4.22		25	2018.10.22	
11	2013.7.30		26	2019.1.7	
12	2013.9.26		27	2019.3.6	
13	2013.12.23		28	2019.6.17	
14	2014.3.1		29	2019.12.27	
15	2015.2.3.		30	2020.3.9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번호	개정일자	개정자 (서명)
31	2021.1.18				
32	2021.3.29				
33	2021.9.6				
34	2021.12.13				
35	2022.8.10				
36	2022.10.24				
37	2023.1.16				
38	2023.2.27				
39	2023.5.8				
40	2023.8.21.				
41	2023.12.18.				
42	2024.2.26				
43	2024.4.29				

직제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정석인하학원 정관 제7장 제3절과 한국항공대학교 (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대학교의 직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23.>

제2조 (구성) 본 대학교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사조직 및 행정조직을 둔다.

1. 단과대학 및 학부: 공과대학, 시융합대학, 항공·경영대학, 인문자연학부, 자유전공학부 <개정 2021.3.29.>
2. 대학원: 대학원, 항공·경영대학원, 항공우주정책대학원 <개정 2023.12.18>
3. 행정본부: 교무처, 학생처, 입학처, 기획처, 연구협력처, 사무처, 국제교류처 <개정 2018.3.1., 2023.12.18>

제3조 (부속기관) 본 대학교 부속기관으로 학술정보관, 신문사, 방송국, 전산정보원, 학생생활·성평등상담소, 항공우주박물관, 평생교육원, 생활관, 미래교육혁신원, 비행교육원, 항공기술교육원, 항공교통관제교육원, 한국항공안전교육원, 관제소, 항공·경영교육혁신센터, 기초교양교육원, 영어교육원, 사회봉사단 등을 둔다.<개정 2007.9.1. 2008.10.30. 2009.6.1. 2010.3.17. 2011.3.10. 2012.7.21. 2013.4.22. 2013.9.26. 2014.3.1. 2015.2.3. 2015.7.21. 2016.1.12. 2016.8.1. 2017.3.1.,2018.10.22., 2019.1.7.,2019.3.6.,2019.6.17., 2023.1.16., 2023.5.8., 2023.12.18>

제4조 (부속연구기관 및 센터) 본 대학교에 <별표1>과 같이 부속연구기관 및 센터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5.7.21]

제5조 (교직원) 본 대학교에서는 총장, 부총장 외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교직원을 둔다.

<개정 2012.10.31. 2015.7.21>

1. 교원 : 교수, 부교수, 조교수, 조종실기교수, 조종실기부교수, 조종실기조교수
2. 직원 : 행정직, 기술직, 행정사무직 <개정 2023.2.27.>
 - (1) 행정직 : 참여, 부참여, 참사, 부참사, 주사, 부주사, 서기, 부서기 <개정 2023.2.27.>
 - (2) 기술직 : 실험부참여(사서부참여), 실험기정(사서참사), 실험기좌(사서부참사), 실험기사(사서), 실험기사보(부사서), 실험기원(사서보), 기원보

(3) <삭제 2023.02.27.>

(4) 행정사무직 <개정 2023.2.27.>

[중전 제4조에서 제5조로 변경 <2015.7.21>]

제6조 (기타 교직원) 제5조의 교직원 외에 필요에 따라 비전임교원으로 명예교수, 석좌교수, 초빙교수, 겸임교원 등을 둘 수 있으며, 조교 및 계약직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4.22. 2015.7.21>

[중전 제5조에서 제6조로 변경 <2015.7.21>]

제7조 (정원) 본 대학교 교직원의 정원은 법령 및 정관에 의하여 정한다.

[중전 제6조에서 제7조로 변경 <2015.7.21>]

제 2 장 총장, 부총장

제8조 (총장) 총장은 본 대학교를 대표하고 교무를 통할한다.

[중전 제7조에서 제8조로 변경 <2015.7.21>]

제9조 (부총장) ① 본 대학교에 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로 보한다.

②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고 총장 유고시에는 부총장, 일반대학원장, 교무처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3.7.30.>

[중전 제8조에서 제9조로 변경 <2015.7.21>]

제10조 (비서실) 총장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비서실을 두고 비서실장은 부참사(실형기좌, 사서부참사) 이상으로 보하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중전 제8조의2에서 제10조로 변경 <2015.7.21.>] <개정 2024.4.29.>

제10조의2 (대학일자리센터) ① 센터 사업을 수행하는 책임자로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으로 보하고, 대외적으로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부센터장을 둘 수 있다.<신설 2018.6.15>

② 센터에는 학생경력개발팀을 두며, 팀장은 부참사(실형기좌, 사서부참사) 이상으로 보한다.<신설 2018.6.15.><개정 2019.12.27., 2021.9.6., 2021.12.13.>

제10조의3 (현장실습지원센터) ① 센터 사업을 수행하는 책임자로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으로 보한다.

② 센터에는 현장실습지원팀을 두며, 팀장은 부참사(실형기좌, 사서부참사) 이상으로 보한다.

[본조 신설 2021.12.13.]

제 3 장 대학·학부(과) 및 대학원

제11조 (단과대학 및 대학원) ① 단과대학에는 공과대학, 시융합대학, 항공·경영대학을 두며 학장은 부교수이상으로 보한다.<개정 2017.3.1., 2021.3.29.>

② 대학원에는 대학원, 항공·경영대학원, 항공우주정책대학원을 두며 원장은 부교수 이상으로 보한다.<개정 2008.6.1., 2023.12.18>

③ 학장과 대학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단과대학 또는 각 대학원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하여 학생을 지도한다.

- ④ 각 대학원의 각 학과에는 주임교수를 둘 수 있으며 조교수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 ⑤ 각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행정수행을 위하여 행정실을 두고, 행정실에는 팀장을 둘 수 있으며, 부참사(실험기좌, 사서부참사) 이상으로 보한다.<개정 2007.9.1, 2008.9.1., 2011.3.10, 개정 2021.9.6.>
- ⑥ 항공·경영대학에 항공·경영교육혁신센터를 두며,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며, 필요시 각 프로그램별로 PD 교수를 둘 수 있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개정 2008.6.1, 2008.10.30>[중전 제9조에서 제11조로 변경 <2015.7.21.>] <개정 2016.8.1.>
- ⑦ 삭제 <2023.1.16.>
- ⑧ AI융합대학에 AI· SW 교육원을 두며, 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필요 시 각 센터별로 센터장을 둘 수 있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본항 신설 2021.9.6.>

제12조 (학부 및 학과) ① 본 대학교의 학부 및 학과는 학칙에 정한 바에 의한다.

- ② 각 학부 및 학과에 학부장 및 학과장을 두고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며, 필요시 부학부장 및 전공주임교수를 둘 수 있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중전 제9조의2에서 제12조로 변경 <2015.7.21>]

제 4 장 행 정 부 서

제13조 (교무처) ① 교무처에 교무팀을 두며 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팀장은 부참사(실험기좌, 사서부참사) 이상으로 보한다.<개정 2021.9.6.>

- ② 삭제
- ③ 삭제 <2008.6.1>
- ④ 교무처 산하에 기초교양교육원, 영어교육원을 둔다.
<신설 2011.11.29.><개정 2015.7.21., 2016.8.1. 2017.3.1., 2019.1.7.,2019.6.17>
- ⑤ 삭제 <2015.7.21>
[중전 제10조에서 제13조로 변경 <2015.7.21>]

제14조 (학생처) ① 학생처에 학생지원팀, 새내기성공센터를 두며 새내기성공센터에 새내기지원팀을 둔다. 처장 및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팀장은 부참사(실험기좌, 사서부참사) 이상으로 보한다. 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센터장을 둘 수 있다.

- <개정 2011.3.10., 2014.3.1.,2017.3.1.,2019.12.27.,2020.3.9., 2021.9.6.>
- ② 삭 제 <2011.3.10.>
- ③ 학생처 산하에 생활관을 둔다<신설 2014.3.1.>
- ④ 학생건강증진을 위하여 학생지원팀 내 의료지원실을 둔다.<신설 2015.7.21>
[중전 제11조에서 제14조로 변경 <2015.7.21>]

제15조 (기획처) ① 기획처에 기획홍보팀, 예산평가팀을 두며 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팀장은 부참사(실험기좌, 사서부참사) 이상으로 보한다. <개정 2016.1.12., 2021.9.6.>

- ② 삭제
- ③ 삭 제 <2017.3.1>

[종전 제12조에서 제15조로 변경 <2015.7.21>]

제16조 (연구협력처) 연구협력처에 연구기획팀과 연구지원팀을 두고, 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며, 팀장은 부참사(실험기좌, 사서부참사) 이상으로 보한다.

[종전 제14조에서 제16조로 변경 <2015.7.21.>]<개정 2009.6.1., 2021.9.6.><본조 전문개정 2024.2.26.>

제17조 (입학처) 입학처에는 입학관리팀을 두며, 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팀장은 부참사(실험기좌, 사서부참사) 이상으로 보한다.[조문신설 2014.3.1.]

[종전 제14조의3에서 제17조로 변경 <2015.7.21.>]<개정 2021.9.6.>

제18조 (사무처) ① 사무처에 총무팀, 시설관리팀, 안전관리팀, 재무팀 및 예비군대대를 두며 처장은 참여 또는 부참여로 보하고 팀장은 부참사(실험기좌, 사서부참사) 이상으로 보하며 대대장은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거 보한다.<개정 2011.9.1., 2021.9.6., 2023.1.16.>

② 삭제

[종전 제13조에서 제18조로 변경 <2015.7.21.>]

18조의2 (국제교류처) ① 국제교류처에는 국제개발협력센터, 한국어교육센터, 국제교류팀, 유학생지원팀을 둔다. 처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보하며, 팀장은 부참사(실험기좌, 사서부참사) 이상으로 보한다. <신설 2023.12.18>

② 국제개발협력센터에는 사업추진팀을 둘 수 있으며, 팀장은 부참사(실험기좌, 사서부참사) 이상 또는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보한다. <신설 2023.12.18>

③ 한국어교육센터에는 한국어교육팀을 둘 수 있으며, 팀장은 부참사(실험기좌, 사서부참사) 이상 또는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보한다. <신설 2023.12.18>

제 5 장 부속기관 [전부개정 2015.7.21.]

제19조 (학술정보관) 학술정보관에는 학술정보팀을 두며, 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팀장은 부참사(실험기좌, 사서부참사) 이상으로 보한다.<개정 2021.9.6., 2023.5.8.>

제20조 <삭제 2019.3.6>

제21조 (신문사) 신문사에는 사장을 두며, 사장은 총장이 되고 편집인겸 주간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제22조 (방송국) 방송국에는 국장을 두며, 국장은 총장이 되고 방송주간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제23조 (전산정보원) ① 전산정보원에는 전산정보전략팀을 둔다.

② 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정보화 책임관이 되며, 팀장은 부참사(실험기좌, 사서부참사) 이상으로 보한다.<개정 2021.9.6.>

제24조 (인권센터) ① 인권센터에는 인권·성평등상담소, 학생생활상담소를 둔다.

② 인권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부센터장을 둘 수 있다.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인권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보하고, 부센터장은 부참사(실험기좌, 사서부참사) 이상으로 보한다.

③ 인권·성평등상담소 및 학생생활상담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상담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보한다.

[전문 개정 2021.12.13.]

제25조 (항공우주박물관) ① 항공우주박물관은 평생교육원 산하에 두며, 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개정 2017.3.1.,2018.10.22>

② 항공우주박물관에는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에는 국장을 둘 수 있으며, 부참사(실험기좌, 사서부참사) 이상으로 보한다.<개정 2021.9.6.>

제26조 <삭제 2023.12.18>

제27조 (평생교육원) 평생교육원에는 교육지원팀을 두며, 원장 및 부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고, 팀장은 부참사(실험기좌, 사서부참사) 이상으로 보한다.<개정 2018.10.22., 2021.9.6., 2024.4.29.>

제28조 (생활관) ① 생활관은 학생처 산하에 두며, 관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② 생활관에는 운영실을 두며, 팀장은 부참사(실험기좌, 사서부참사) 이상으로 보한다.

<개정 2016.5.27., 2021.9.6.>

제29조 (미래교육혁신원) ① 미래교육혁신원에는 교수학습센터, 교육성과관리센터, 원격교육지원센터를 두며, 미래교육혁신원장은 총장으로 하고, 각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② 교수학습센터에는 교수학습지원실, 교육성과관리센터에는 교육성과지원실을 두며, 원격교육지원센터에는 원격교육지원실을 둔다. 각 지원실에는 팀장을 두며 팀장은 부참사(실험기좌, 사서부참사) 이상으로 보한다.

<개정 2019.6.17., 2021.1.18., 2021.9.6.>

제30조 <삭제 2016.1.12>

제31조 (비행교육원) ① 비행교육원에는 기획총괄팀과 수색비행훈련원, 정석비행훈련원, 울진비행훈련원을 두며, 수색비행훈련원에 비행교육팀과 정비팀, 정석비행훈련원에 비행교육팀, 정비팀과 교육지원팀, 울진비행훈련원에 비행교육팀, 정비팀과 교육지원팀을 둔다.

② 비행교육원에는 원장을 두며, 각 훈련원에는 부원장을 둘 수 있다. 원장 및 부원장은 부교수(조종실기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비행교육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보하며, 팀장은 조종실기조교수, 부참사(실험기좌, 사서부참사) 이상 또는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보한다.

[전문개정 2016.1.12]<개정 2021.9.6.>

제32조 (항공기술교육원) 항공기술교육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제33조 (항공교통관제교육원) 항공교통관제교육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혹은 관련 분야 전문가로 보한다.<개정 2024. 4. 29.>

제34조 (한국항공안전교육원) 한국항공안전교육원에 원장 및 부원장을 두며, 원장과 부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항공안전·보안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보한다. <개정 2018.3.1., 2021.12.13.>

제35조 (관제소) 관제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제35조의2 <삭제 2023.1.16.>

제35조의3 (기초교양교육원) 기초교양교육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다.<신설 2017.3.1>

제35조의4 (영어교육원) 영어교육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7.3.1>

제35조의5 (사회봉사단) 사회봉사단에는 총재를 두며, 총재는 총장이 되고 학생봉사단 단장은 학생처장으로 교직원 봉사단 단장은 사무처장으로 보한다. <신설 2017.3.1.>

제35조의6 (항공·경영교육혁신센터) 항공·경영교육혁신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며, 필요시 각 프로그램별로 PD 교수를 둘 수 있고,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신설 2019.1.7.>

제 6 장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 등<개정 2009.6.1.>

제36조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 ① 본 대학교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7.21>

② 산학협력단에 단장을 두며 단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③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의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정관 또는 규정을 정한다. [전문개정 2007.9.1.]

[중전 제38조에서 제36조로 변경 <2015.7.21>]

제37조 (학군단) 본 대학교는 학생군사교육단을 둔다.[본조신설 2009.6.1.]

[중전 제38조의2에서 제37조로 변경 <2015.7.21>]

제 7 장 보 칙

제38조 (부서신설) 총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부서를 신설 또는 통폐합 할 수 있다.

[중전 제39조에서 제38조로 변경 <2015.7.21>]

제39조 (사무분장) ① 각 부서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각각 소관업무를 관장한다.

② 각 부서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사무분장 규정에 의한다.

③ 한시적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는 해당 부서장이 구성·운영한다.

④ 삭제<2015.7.21>

[중전 제40조에서 제39조로 변경 <2015.7.21>]

제40조 (임기) 총장, 부총장 및 각급 보직에 대한 임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으며 연임할 수 있다.

1. 총 장 : 4년

2. 부총장 : 2년

3. 각 단과대학장, 각 대학원장, 각 행정처장, 각 학부(과)장, 부속기관장 등은 2년, 학부(과)장은 4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7.21., 2020.3.9>

[중전 제43조에서 제40조로 변경 <2015.7.21>]

제41조 (부팀장) 각 부서에는 필요에 따라 부팀장을 둘 수 있으며, 주사(실험기사, 사서) 이상으로 보한다.[조문신설 2015.7.21.]<개정 2021.9.6.>

부 칙

1.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정한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1985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1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16.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7년 3월 12일부터 적용한다. 단, 제 37조의5(국제문화교육원)는 2007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17.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18.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조 및 제9조제2항의 항공산업·경영대학원의 명칭 변경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8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2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1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6.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3월 10일부터 시행하되, 2011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
27.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8.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9.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하되, 2012년 3월 29일부터 적용한다.
30.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 기존 조교에서 실습사무직 직종(명칭) 변경에 따른 개정 사항은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3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7조의11 및 제37조의12는 2013년 1월 25일부터 적용한다.

3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3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3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하되, 2013년 8월 28일부터 적용한다.
3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6.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37조의14는 201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37.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38.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39.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40.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4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4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17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4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6월 15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6.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1>의 23 Maker사업지원 센터는 201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47.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7일부터 시행하되, 201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48.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3월 6일부터 시행하되,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49.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6월 17일부터 시행하되, 2019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50.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하되, 2020년 1월 1일 적용한다.
5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3월 9일부터 시행하되, 2020년 2월 1일 적용한다.
5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5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하되,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5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9월 6일부터 시행하되, 2021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55.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하되, 제10조의3은 2021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56.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② 항공재료연구센터(現 신소재연구센터), 기계항공산업신뢰성연구센터, 표면기술응용연구센터의 부속연구기관 등록과 지역사회개발연구소, 기초학문연구소, 경영연구소, 항공우주정책연구소의 자립연구센터변경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③ 개도국기술경영지원센터의 등록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④ 신소재연구센터(舊 항공재료연구센터)의 명칭변경은 2021년 10월 26일부터 적용한다.
57.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58.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6일부터 시행하되, 2022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59.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60.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 단, <별표1> 부속연구기관 및 센터 관련 개정사항은 2023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61.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6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63.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64.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4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부속연구기관 및 센터<신설 2015.7.21.>

<개정 2018.10.22., 2021.12.13., 2022.8.10., 2022.10.24., 2023.5.8., 2023.8.21.>

순번	기관명	책임자	보임 기준
1	항공우주산업기술연구소	소장	조교수 이상 교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2	<삭제 2022.8.10>		조교수 이상 교원
3	항공전자연구소	소장	
4	항공산업정책연구소	소장	
5	<삭제 2022.8.10>		
6	항공안전관리연구소	소장	
7	<삭제 2022.8.10>		
8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소장	
9	<삭제><개정 2016.3.1>		
10	교통물류연구소	소장	
11	<삭제><개정 2016.3.1>		
12	디스플레이기술교육센터	센터장	
13	차세대방송미디어기술연구센터	센터장	
14	유비쿼터스기술응용연구센터	센터장	조교수 이상 교원
15	KAU로봇연구센터	센터장	
16	<삭제 2023.5.8>	센터장	
17	첨단무인기연구센터	센터장	
18	<삭제 2023.5.8>	센터장	
19	<삭제 2022.8.10>		
20	항공우주체계시험인증연구센터<개정 2022.10.24>	소장	
21	창업지원센터	센터장	
22	공동기기센터	센터장	
23	<삭제 2023.5.8>		
24	미래항공모빌리티기술센터<신설 2021. 12. 13>	센터장	부교수 이상 교원
25	신소재연구센터 <신설 2022.8.10>	센터장	조교수 이상 교원
26	기계항공산업신뢰성기술연구센터 <신설 2022.8.10>	센터장	조교수 이상 교원
27	표면기술응용연구센터 <신설 2022.8.10>	센터장	조교수 이상 교원
28	개도국기술경영지원센터 <신설 2022.8.10>	센터장	조교수 이상 교원
29	KAU 우주시스템기술연구소 <신설 2023.5.8>	소장	조교수 이상 교원